

동작구의회공고 제2020-33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해보험의 가입,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현재 추진 중인 통·반장 지원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통·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공무 수행 범위에서만 공개 등을 하도록 비밀 유지를 명시화하여 투명한 통·반장제도의 운영과 통·반장이 구민에게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장이 사회적 물의 등으로 즉시 해촉된 경우 5년 간 통장 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 나. 통·반장에게 편의제공·지원 사업 예시(안 제10조)
- 다. 통·반장의 직무상 비밀 유지 의무 규정(안 제12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른 체계·자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동작구 통·반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으로, “주민자조”를 “주민자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관할하에 통”을 “관할 하에 통”으로, “관할하에 반”을 “관할 하에 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은 6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③ 반은 40세대부터 9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조 전단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개폐하는”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1회의 연임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를 “두 차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로, “해당통”을 “해당 통”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통장이 제5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장”을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2호) 중 “통장 또는 반장”을 “통·반장”으로, “경우”를 “것이 확인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통장 및 반장”을 “통·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통장 임무”를 “임무”로, “불량한때”를 “불량한 경우”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통·반원의 비상연락”을 “비상연락”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동행정”을 “동 행정”으로 한다.

1. 통장의 경우 반장 및 통원의 지도, 반장의 경우 반원의 지도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편의제공 및 지원)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통장에 한한다.

1. 직무교육
2. 모범 통·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 활동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4.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

6.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반장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 내”를 각각 “범위”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의 이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u>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방자치법」</u> <u>제4조의2제5항에</u>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u>주민자조</u>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 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u>관할하에</u> <u>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u> ② 통은 6개반 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수를 가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0.5.4, 개정2008.11.17., 2010.6.30> ③ 반은 40세대 부터 9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반	<u>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 조례</u> 제1조(목적) -- <u>조례는 「지방자치</u> <u>법」 제4조의2제5항</u>----- ----- ---- <u>주민자치</u>----- ----- -----. 제2조(통·반의 조직) ① -- <u>관할 하에</u> <u>통</u>----- <u>관할 하에 반</u>-----. ② 통은 6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③ 반은 40세대부터 90세대까지로 구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

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 ①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1회의 연임기간 종료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신규위촉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모집공고게시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전에 하고 공고기간은 7일간(토·일·공휴일 포함)으로 하며 공고 방법은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생략)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장-----

-. ----- 개정 또는 폐지하는 --.

제4조(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 ① --
----- 두 차례만

두 차례-----

-----.

② 구청장은 통장이 제5조제4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

----- 동 주민센터 -----
----- 해당 통-----
-----.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생략)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한 경우

3. (생략)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통장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업무 수행 실적이 불량한때

6. (생략)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 6. (생략)

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8. ~ 11. (생략)

12.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생략)

제10조(편의제공 및 지원) 통·반장은

④ -----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
-----.

1. (현행과 같음)

3. ----- 통·반장-----

것이 확인된 경우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
통·반장-----
--

5. 임무 -----
----- 불량한 경우

6. (현행과 같음)

제7조(임무) ① -----
----- 다음 각 호의 -----.

1. 통장의 경우 반장 및 통원의 지도, 반장의 경우 반원의 지도

2. ~ 6. (현행과 같음)

7. 비상연락 -----

8. ~ 11. (현행과 같음)

12. -----
- 동 행정-----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및 지원) 구청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구청장은 통·반장의 직무교육과 모범 통·반장의 우수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통·반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와 제4호는 통장에 한한다.

1. 직무교육
2. 모범 통·반장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비교시찰, 견학 및 연수 활동
3.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의 가입
4.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
6.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반장 직무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비수당 등) ① -----
 --- 범위-----

 -----.

② ----- 범위-----
 -----.

제12조(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u>제12조</u> (생략)	<u>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의 이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u> <u>제13조</u> (현행 제12조와 같음)
-------------------------	---